

경영경제대학 동아리 회칙

(2023.05.30 개정본)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경영경제대학에 소속된 동아리는 '경영경제대학 동아리' 혹은 '경경대 동아리' 라고 칭한다.

제2조(목적) 경영경제대학 동아리의 목적은 경영경제학도로서 관심가질 수 있는 활동을 같이 하여 경영경제학도 상호간의 발전과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정식동아리는 경영경제대학 운영위원회(이하 경경운위)에서 승인 받은 동아리를 칭하며, 신규동아리는 이전 학기 가등록 상태에서 정식동아리로 승격되는 동아리를 칭한다. 또한 가등록동아리는 경경운위에서 가등록동아리 인준을 의결한 동아리를 칭한다.

제2장 등록

제4조(재등록 및 신규 등록 요건)

1. 동아리 회칙 1부 (단, 동아리 전 회원의 의사로 회칙이 불필요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유서와 동아리 활동 강령 1부를 대신 제출할 수 있다.)
2. **경영경제대학 소속 30인 이상**이 서명한 회원명부 1부 (단, 동아리 회원은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한 학과/부를 제외한 2개 학과/부에서 각각 전체 회원의 5% 이상의 학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한 학과/부의 회원 수는 75%를 초과할 수 없고 최소 3개 이상의 학과/부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전 학기 동아리 활동내용, 동아리 등록목적 및 동아리 소개서 (단, 전 학기 동아리 활동내용은 재등록 동아리에 한한다.)
4. 동아리 활동계획서
5. 동아리의 임원은 최소 두 개 이상의 학과/부에서 한다. (임원은 회장·부회장·국/부장에 한함.)

제5조(신규 동아리 등록 자격)

1. 신규 동아리 등록 대상은 제6조에 의하여 가등록된 동아리들 중 등록된 학기를 제외한 두 학기 이상의 활동을 지속한 동아리들로 한다.
2. 단, 가등록 동아리로 사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신규 동아리 충족 조건을 만족하며 두 학기 이상의 활동을 지속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신규 동아리 등록 대상으로 인정한다.

제6조(가등록)

1. 전체 동아리 인원 중 경영경제대학 인원의 비율이 75% 이상이어야 한다. 타 단과대 인원의 경우 동아리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가등록 동아리는 **경영경제대학 소속 20명 이상**을 기준 인원으로 한다. (단, 최소 2개 이상의 학과/부에서 회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한 학과/부를 제외한 2개 학과/부에서 각각 5% 이상의 학생으로 회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3. 가등록 동아리는 자치공간과 동아리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4. 가등록 동아리 인준은 매 학기 경경운위 의결로 결정한다. (단, 등록기간은 경경운위에서 정한다.)
5. 가등록 동아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신규 등록 전까지 계속 가등록 상태가 유지된다.

제7조(등록기간)

1. 매 년도 동아리 등록기간은 학생회장 선출 이후부터 해당 학기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경경운위에서 재등록과 신규 등록 및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단, 학생회장 선출은 경영경제대학 선거시행세칙에 준하며 매 년도 11월 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생회장 부재 시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한다.)
2. 동아리의 활동기간은 등록일 부터 다음 학기 서류 제출일일로 하며, 동아리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면 동아리 등록기간에 제4조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경경운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경경운위에서 의결 시 등록기간을 당기거나 미룰 수 있다.

제8조(의결과 완료)

1. 등록은 12월말에 하며, 각 동아리는 등록기간에 제4조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경영경제대학 학생회에 등록한다.
2. 등록마감과 함께 학생회장은 즉시 이를 공고하며 경경운위에서 의결한다.
3. 경경운위에서 등록이 확정된 동아리는 학생회장이 이를 3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며 공포와 함께 등록이 완료된다.
4. 공포 후 24시간을 이의제기 기간으로 지정한다.

제3장 운영

제9조(동아리 자치공간 배정)

1. 동아리 방은 정식 동아리의 자치공간이며, 이 공간의 운영에 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침해 받지 아니한다. 단, 동아리 자치공간을 타 동아리와 바꾸는 경우에는 경경운위의 심의를 거쳐 허가한다.
2.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의 경우 자치공간을 반납한다.
 - 1) 인륜을 해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 2) 화재문제, 성문제, 폭행문제 등 경영경제대학의 위상에 위해가 되는 경우
 - 2) 경영경제대학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가 초래되는 경우
 - 4) 경영경제대학 학생회장 혹은 2/3이상의 경경운위의 발의로 의결했을 경우
3. 동아리 자치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경경운위를 통해 동아리에게 배정하거나 경경운위가 인정한 단위의 자치공간으로 배정한다.
4. 배정방법
 - 1) 동아리 배정은 별도로 마련된 '경영경제대학 동아리 공간 배정 기준'에 준하여 실시한다.
 - 2) 각 학과/부 별 동아리 자치공간 배정에 참여하는 동아리는 경영경제대학 동아리 자치공간 배정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다.
 - 3)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단, 결정하지 못할 경우 경경운위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5. 자치공간 반납
재등록이 거부된 동아리는 공고 후 10일 안에 동아리 자치공간을 정리해야 한다. 유예기간 후에 동아리 방안의 물건은 포기의사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여 경영경제대학 학생회에서 임의로 처리할 수 있고 동아리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동아리 대표자 회의)

1. 각 정식 경영경제대학 동아리 대표자 1인과 경경운위로 구성한다. (단, 동아리 대표자 부재 시 대리인 출석 가능하다.)
2. 동아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한다.
3.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가등록 동아리 대표자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발언권만 가지고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정식 동아리가 없을 경우 가등록 동아리 대표자들 모두에 의결권을 부여하고 정식 구성원으로 인정한다.)
5. 동아리 대표자 회의는 경영경제대학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의 요구 또는 동아리 대표자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될 수 있다.

6. 회의의 의장은 경영경제대학 학생회장이 맡으며 부재 시 부학생회장이 대신한다.

제11조(동아리 활동보고)

1. 가등락을 포함한 모든 동아리는 종강 후, 2주 내로 반드시 활동보고서를 제출한다. 활동보고는 전 학기 활동내역과 다음 학기 활동계획 등을 포함한다. (단, 2주 내로 제출하지 않은 동아리는 경고 조치가 되며, 그해 본 동아리 대표자 임기 기간동안 경고는 누적된다. 경고조치를 받은 이후 1주 내로 활동보고서를 미제출 시 징계사항에 해당된다.)
2. 경영경제대학 학우 누구나 경영경제대학 학생회에 동아리 활동보고에 대하여 건의 할 수 있다.

제12장(관리) 경영경제대학 동아리의 관리는 경영경제대학 학생회가 맡고, 부재 시 비상대책위원회가 맡는다.

제4장 징계심의위원회

제13조(구성)

1. 징계심의위원회 위원은 경경운위 구성원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경경운위 논의 후에 징계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동안 참관인을 둘 수 있다.)
2. 경영경제대학 학생회장이 징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경영경제대학 학생회장 자리가 궐위 시에는 비상대책위원장이 징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제14조(소명) 징계심의위원회가 열릴 경우 해당 동아리 대표자 1인이 참석하여 징계에 관한 소명을 해야 한다. (단, 필요시 징계 사항 직접관련자는 경경운위가 소환할 수 있다.)

제15조(의결)

1. 징계심의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참관인에게는 징계 심의 위원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일시적인 발언권을 부여한다. (단, 의장이 일시적인 발언권을 제재할 수 있다.)
3. 경영경제대학 학생회 부원에게는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지만, 발언권은 부여한다.

제16조(동아리 징계의 사유 및 조치)

1. 징계에 해당하는 사항
 - 1) 대표자 회의에 2회 연속 불참한 경우, 단 대리인 출석 인정
 - 2) 지원금이 수급된 동아리 행사가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 여기서 동아리 행사란 학기당 1회 이상 경영경제대학 학우를 위한 교내행사를 칭한다. (동아리 내부행사 제외) 세부적인 징계 조치는 징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
 - 3) 제2조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경우
 - 4) 경영경제대학 학생회, 각 학과/부 학생회, 경영경제대학 타 동아리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을 행한 경우
 - 5) 이 외에 경경운위 심의 하에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세부적인 징계 조치는 경경운위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제17조(제정) 본 회칙은 경영경제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에 의하여 제정되며 제정 후 3일 이내에 학생회장이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18조(개정) 본 회칙은 동아리 대표자 회의(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의 의결)에 의하여 개정된다.

제19조(적용 범위)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은 동아리 대표자 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제20조(경영경제대학 동아리 자치공간 배정 기준)

1. 기본적으로 상위 n개 동아리의 순위대로의 선정을 원칙으로 하며, 동점일 경우 선번 항목의 고득점 동아리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2. 동아리 공간 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동아리 목적 (10점 만점)
 - 2) 구성 비율 (10점 만점)
 - 3) 자치공간 활용도 (10점 만점)
 - 4) 동아리 인원 수 (10점 만점)
3. 동아리목적은 동아리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에 대해 평가하는 항목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동아리의 목적에 부합하는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학기 1회 2점, 2회 이상 4점)
 - 2) 목적에 맞게 어떠한 동아리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학기 1회 2점, 2회 이상 4점)
 - 3) 교외에서 주관·주최한 행사에 참여할 시 추가 점수 2점 부여
 - 4) 단, 목적 외 친목도모를 위한 동아리 행사의 경우 1점 이상 부여하지 않는다.
4. 동아리 회원은 제4조, 제5조에 명시되어 있는 구성 비율을 갖추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7 개 학부(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10 점 만점을 부여한다.
 - 2) 6 개 학부(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8 점을 부여한다.
 - 3) 5 개 학부(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6 점을 부여한다.
 - 4) 4 개 학부(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4 점을 부여한다.
 - 5) 3 개 학부(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2 점을 부여한다.
5. 자치공간 활용도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른다.
 - 1) 경경운위는 동아리의 자치공간을 등록기간이 마감된 후 학기 당 2 회 점검한다.
 - 2) 경경운위는 동아리의 자치공간을 정기점검 1 회, 불시점검 1 회 실시한다.
 - ① 정기점검은 점검 최소 2 주 전까지 공지를 해야 한다.
 - 3) 점검 후 배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기본점수 2점
 - ② 활용도 4점 (가구 및 기자재의 배치, 동아리 회원들의 활용 등 해당 공간을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원활히 활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한다.)
 - ③ 청결도 4점 (청소도구 여부, 자치공간 정돈 상태 등을 고려하여 파악한다.)
 - ④ 활용도 및 청결도는 정기점검에서 각 최대 2점, 불시점검에서 각 최대 2점을 받을 수 있다.
 - 4) 자치공간이 없는 동아리의 경우 다른 동아리가 받은 전체점수의 평균점수를 배점 받는다.
 - 5) 학칙에서 지정한 금지물품이 발각될 경우 그 당시 청결도 점수를 0점으로 한다. 관련 금지물품 규정은 다음과 같다.
 - ① 인화물질(전열기구)
 - ② 비접지콘센트
 - ③ 취사도구, 취침도구
 - ④ 주류
 - 6) 소화기가 없을 경우 그 당시 청결도 점수를 0 점으로 한다.
6. 동아리 인원수에 관련한 점수 부여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동아리 인원수의 인원수의 10 분의 1 의 점수를 부여한다. 단, 100명이 넘는 동아리의 경우 10점 만점을 부여한다.
 - 2) 동아리 인원은 재적생을 기준으로 하되, 9 차 학기 이상의 학생과 졸업생은 포함하지 않는다.
7. 고득점을 위한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경경운위는 동아리에 2일 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8. 부정행위가 명백해졌을 경우 경경운위는 제10조에 따라 등록취소를 한다.
9. 관련 자료에 대한 제출 요구에 불응 및 지연 시, 경경운위는 의결에 따라 해당 동아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